

2021년 지원사업 공고

#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

2020. 7.

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이용시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 
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 및 활용 지원



## 규모

- **30곳 시장 내외 (이용보조: 15곳 내외)**

※ 공영주차장 건립(미확정): 338억원,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(미확정): 6.6억원



## 대상

- 「전통시장법」에 따른 전통시장, 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

※ 지원제외 대상: 농수산물도매시장, 농수산물공판장,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, 가축 시장, 보조금 부정사용 및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아 지급결정 취소 또는 반환된 경우

- **매칭: 국비 60% 이하, 지방비 40% 이상**

※ 다만, 성장촉진지역(국비 70%), 주한미군 공여·반환지역(국비 80%)



## 내용

- **(공영주차장 건립)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**

- **(주차장 이용보조) 전통시장 인근 관공서, 학교 등 공공시설의 주차장 또는 전통시장 인근 사설주차장 사용 비용 지원**



## 기간

- **선정일 ~ '21. 12. 31.**

※ 단, 주차장 신설 및 대규모 증설의 경우 부지매입, 공사기간 등 기간을 고려하여 2년차 이상 사업으로 신청

## II 주차환경개선 신청·선정 절차



### 신청

- 신청 및 접수: ~'20. 7. 24. 까지 (시장 → 시 · 군 · 구 → 시 · 도)
- 문의처: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(042-481-4516)
- 공영주차장 건립



### 선정절차

신청 기초자치체	접수 광역자치체	대상선정 광역자치체 (선정위원회)	최종선정 중기부, 광역자치체 (최종선정협의회)	확정 중기부 (심의조정위원회)
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- 주차장 개보수 및 이용보조

신청 기초자치체	접수 광역자치체	현장평가 광역자치체, 지방청, 외 부전문가	서류평가 공단 (추천추천위원회)	확정 중기부 (심의조정위원회)
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

### 신청서류

-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-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
-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동의서(상인 60% 이상)
- 이해 관계자 동의서(점주, 상인, 주차장 및 진입로 인접주민 등)
-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(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필요)
-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(설치율이 50%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)
-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
- 사전 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(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)
- 지방비 투용자심사결과서 또는 당해연도 심사계획서(실시한 경우에 한함)
-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/ 제공 동의서 등

### III 신청 시 유의사항

3

-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 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완료 필수
  - 주차장의 위치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도보 100m 이내 설치하는 것이 원칙
  - 자체 소유 부지의 현물 제공의 경우, 사업 신청 전에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내용에 반영
    - ※ 단, 정부지원금을 받아 건립된 주차장은 자체 현물의 범위에서 제외
  - 주차장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, 지원대상 통보 후 3개월 이내 부지매입계획을 반드시 신청서에 반영
    - ※ 신규 부지 필요 시,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100% 확보, 주차장 부지 건물 내 임차인 동의 100% 필요
  -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취득한 토지, 건물, 기타 물품 등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소유권 및 관리·수익권을 갖고 관리해야 함
  -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·건물은 국비 보조비을 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 및 국유재산 등록 필수
  - 국고보조금으로 건축된 부동산 및 그 종물은 부기등기 및 중요재산 등록 필수
-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운영지침 참고

### III 신청 시 유의사항

4

#### 주요 우대조건

- 고객 전용 주차장 미보유 시장
- 전체 영업점포 대비 '20.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% 이상임을 관할 시·군·구로부터 확인받은 곳
-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% 이상인 곳
- 고용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
- 2018년 이후 상권활성화(상권르네상스)사업에 선정된 곳
-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 또는 전체영업점포의 50% 이상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상점가
- 화재공제(보험)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% 이상인 전통시장
-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(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, 대상자의 100% 동의) 이상인 시장
-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
- 청년몰, 특성화시장 등과 연계하여 패키지 형태로 추진하는 시장

### ● 주차빌딩 등 복합화 주차장 지원

- 지하주차장 건립지원 협용, 주차면적이 협소해 주차빌딩 건축 등 규모화 지원
  - 평균 80면 이상 확보 가능 토록 지원(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도 부족한 곳은 추가지원 가능)
-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복합화 주차장 건립 가능
  - 전통시장과의 거리에 따른 상인동의율[50m 이내 동의율 70% 이상 확보, 100m 이내 동의율 80% 이상 확보] 필요
  - 전통시장 전용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하며, 해당 주차면수에 대한 사업비만을 지원

### ● 집행부진 방지

- 집행부진 방지를 위해 연도내 완공이 불가능한 경우 2년차 이상으로 사업 추진(신규설치, 대규모 증설 등)
- '19~ 20년 지원사업 실집행률이 50%미만인 시·군·구는 지원 제외
  - \* 실집행률 기준 : (19년 지원사업) 20.7월말, (20년 지원사업) 20.12월말

### ● 자금교부

- 사업비는 중기부에서 시·도로 교부하여, 시·도에서 시·군·구로 교부
- 선정통보 후 국비교부 요청 및 자금 배정계획에 따라 국비 교부 실시

감사합니다

